

# 學 會 會 則

## 第 1 章 總 則

- 第 1 條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士協會定款(第 9 章 第 27 條)에 依하여 設立한다.
- 第 2 條 本會는 大韓物理治療學會라 稱한다.
- 第 3 條 本會則은 大韓物理治療士協會 定款에 依挾(第 9 章 29 條)하여 制定한다. 그러므로 中央 會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.
- 第 4 條 本會의 本部는 서울特別市에 둔다.
- 第 5 條 本會의 目的은 物理治療學의 發展과 會員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는 데 있다.

## 第 2 章 事 業

- 第 6 條 本會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아래 事業을 行한다.
- 1) 物理治療學 研究, 發表 및 學術講演會 開催에 關한 일
  - 2) 物理治療士 講習 및 物理治療學 普及에 關한 일
  - 3) 學會誌 發刊에 關한 일
  - 4) 國外 物理療法學會와의 連結
  - 5) 本學會 會員間의 親睦에 關한 일
  - 6) 其他 本 目的 達成에 必要한 일

## 第 3 章 會 員

- 第 7 條 本會에 入會코져 하는 者는 所定의 入會 節次에 따라 入會 申請을 하고, 本會 任員會의 審査를 通過하여야 한다.
- 第 8 條 會員은 正會員, 準會員 및 名譽會員으로 한다.
- 第 9 條 正會員은 大韓物理治療士 協會에 加入한 會員이라야 한다.
- 第 10 條 準會員은 大韓民國의 物理治療學科를 專功한 者로써 免許證을 所持하지 못한 會員이거나, 現在 物理療法科를 專功하는 學生이라야 한다.
- 第 11 條 名譽會員은 本會 또는 醫學界에 공헌이 현저한 内外 人士로써 每年 會長의 推薦으로 任員會의 認准을 받아야 하고, 選舉權·被選舉權과 會費 부담이 없다.
- 第 12 條 正會員 및 準會員은 任員會에서 決定한 부담금을 納付할 義務가 있다.

## 第 4 章 任 員

- 第 13 條 本會 任員 및 任期는 다음과 같다.

會 長	1 名	任期 2年
副會長	1 名	〃
任 員	7 名	〃 (학술임원은 4名)
監 查	1 名	

第 14 條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總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.

第 15 條 副會長은 會長 有故時에 이를 代理한다.

第 16 條 任員은 任員會를 構成하여 本會 會務를 處理 수행한다.

第 17 條 監事는 會務와 財政을 監査한다.

第 18 條 會長·副會長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.

第 19 條 任員은 會長團에서 任命하여 總會의 認准을 얻어야 한다.

第 20 條 本會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 若干名의 顧問을 둘 수 있다. 顧問은 本會 事業을 遂行 促進키 爲하여 會長 및 任員會의 諮問에 應한다.

## 第 5 章 會 議

第 21 條 總會는 定期 및 臨時 總會로 하고, 定期 總會는 每年 物理治療學會 期間中에 開催地에서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, 臨時 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任員會 或은 正會員 1/3 以上이 要請할 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 總會 開催通告는 開催 1 個月前, 臨時總會는 2 週日 前에 함을 原則으로 한다.

第 22 條 總會는 正會員 在籍人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되고, 諸議決은 出席 人員 過半數로 한다.

第 23 條 總會에 提出한 案件은 定期總會 15 日 前까지 會員에게 文書로 件名과 要旨를 記入하여 通知하여야 한다.

第 24 條 總會에 案件을 提出코져 할 때는 出席會員 1/3 以上의 贊意를 얻어야 한다.

第 25 條 總會는 아래 事項을 審議 議決한다.

- 1) 重要事業 方針에 關한 事項
- 2)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
- 3) 任員 選舉에 關한 事項
- 4) 會則의 修正 및 制度에 關한 事項
- 5) 任員會에 附議 또는 移送되는 事業
- 6) 本 會則에 依하여 審議되는 事項
- 7) 其他 會長이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

第 26 條 任員會는 會長, 副會長 및 任員으로 構成하며, 會長이 이를 召集하고, 그 議長이 된다.

第 27 條 任員會는 各 任員으로 하여금 總務·學術·審査·企劃 4 個의 部分을 分擔하게 한다.

第 28 條 任員會는 定期 및 臨時會로 하고 定期會는 2 個月에 1 回, 臨時會는 會長 또는 任員 4 名 以上の 要請에 依하여 會長이 이를 召集 한다.

第 29 條 任員會의 任務는 아래와 같다.

1) 缺員된 任員의 補選, 任員의 任免, 其他 會則에 規定된 業務

2) 企劃; 諸 政策에 關한 計劃 및 進行

3) 學術; 學會誌 發刊, 學術大會 및 集談會에 關한 事項

4) 總務; 歲入 · 歲出 豫算編成 및 會費審查料의 策定

5) 審査; 會員의 資格審査 · 名譽會員 및 顧問의 推薦, 賞罰에 關한 事項

第 30 條 會長은 會務를 諮問받기 爲하여 會員 中에서 10 名 内外의 자문 위원을 定期總會後 10 日 以內에 委屬한다.

第 31 條 任員會의 書記는 總務로 하고, 그 事業을 總會에 報告한다.

## 第 6 章 財 政

第 32 條 本會의 財政은 아래의 收入으로 充當한다.

1) 中央會 補助(學術誌 및 學術大會準備費)

2) 贊助金 및 其他

第 33 條 本會 財産 中 現金은 會長 名義로 金融機關에 預入하고 總務가 담당한다.

第 34 條 會計年度는 中央會會計年度에 準한다.

## 第 7 章 罰 則

## 第 8 章 附 則

第 1 條 本會 會則의 修正은 總會에서 하되 在籍任員 過半數 以上の 參席과 出席會員 2 / 3 以 上의 贊同을 얻어야 한다.

第 2 條 本會則은 學會가 發足한 날 부터 効力を 갖는다.